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상정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항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5조)
-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5명”을 “3명”으로 하고, “전문분야 교수”를 “전문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채용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4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5조)
- 다.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전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라.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마.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8조)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5명”을 “3명”으로 하고, “전문분야 교수”를 “전문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채용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관계 국장급 공무원,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u>전문분야 교수</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3명----- ----<u>전문가</u>----- -----.</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p> <p>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p> <p>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p> <p>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p> <p>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p> <p>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p> <p>6.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u><신설></u></p> <p>③·④ (생략) <u><신설></u></p>	<p>② ----- ----- -----</p> <p><u>다만,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p>	<p>제7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관계 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 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9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第5條 (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의 設置) 民間投資事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2008.2.29>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民間投資와 관련된 主要政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指定取消에 관한 사항

6. 기타 民間投資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附議하는 사항

○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폐지 조례)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정 1995. 06. 19 조례 제1360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개정 2000. 02. 10 조례 제172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10>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각 상임위원회별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02.1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0.02.1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0.02.1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0.02.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민자투자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민자투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02.10> <전문개정 1998.10.1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